

서울특별시 암사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7
----------	----

2018년 9월 7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18년 8월 21일
- 다. 상정일자 : 제28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8년 9월 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 가. 제안이유
 - 암사생태공원은 한강공원의 생태를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교육하고 참여자에게 생태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생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음
 - 외부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생태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많은 경험을 축적한 기관에 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시설명 : 암사생태공원
-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616-1 일대
- 시설규모 : 162,000㎡(학습시설 151.67㎡, 지상2층)
- 이용대상 : 한강 이용 시민
-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19. 4. 1. ~ 2022. 3. 31)
 - 위탁사무
 - 한강과 관련한 체험형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자원봉사자 모집 및 상근인력을 통한 한강 생태관리
 - 암사생태공원 학습시설 유지관리(시설, 물품 등)
 - 소요예산 : 115,537천원(연간, 2017년 기준)
 -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3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최초위탁 : 2012.3.1.~2014.2.28.(2년) 시민환경포럼
 - 2차 재 위 탁 : 2014.3.1.~2017.2.28.(3년) 시민환경포럼
 - 3차 재 위 탁 : 2017.4.1.~2019.3.31.(2년) 시민환경포럼

3) 필요성

- 전문기관의 경험과 창의적 역량을 도입하여 수준 높은 공원관리와 생태교육으로 이용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암사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의 민간 위탁이 필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의3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9년 예산편성 요구

4.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 김 선 희)

가. 개요

-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616-1 일대에 위치한 암사생태공원은 계절별 생태 프로그램 운영과 생태환경 모니터링 및 봉사자 교육 등을 목적으로 조성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민간 위탁으로 관리·운영 중인 시설로서
-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외부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한강변에서 양질의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2019년 3월 31일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한강생태공원의 현황 및 운영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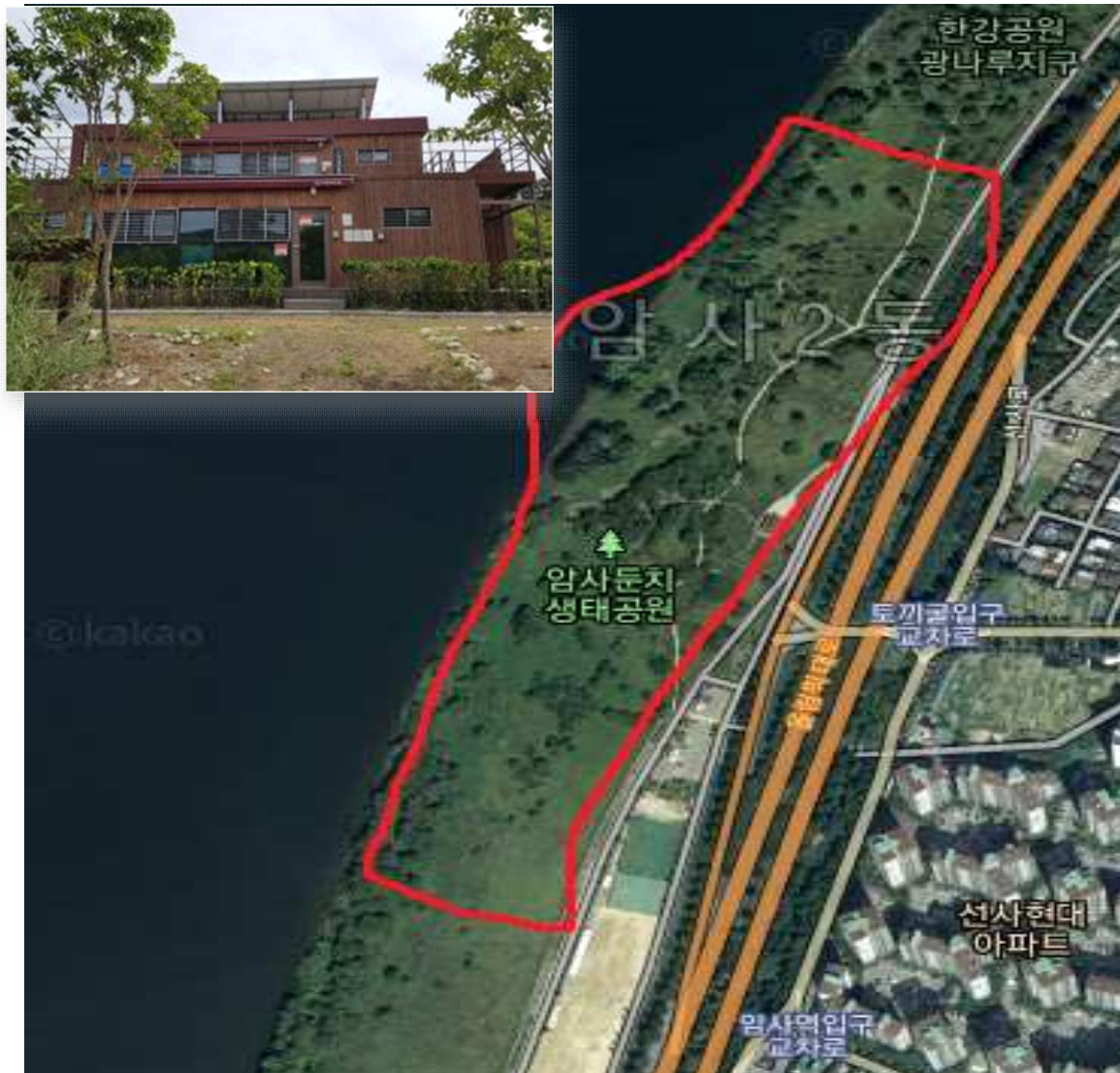
- 한강생태공원은 한강공원내 생태계 보호와 생태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한강공원내 10곳이 조성되어 있음. 이 중 강서습지, 뚝섬, 여의도샛강, 잠원, 잠실, 이촌 등 6곳은 직접운영 방식이며, 고덕수변, 야생탐사, 난지습지원, 암사생태공원 등 4곳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음.

<표 1> 한강생태공원의 운영 방식

구 분	직접 운영						민간 위탁			
공원명	강서습지	뚝섬	여의도샛강	잠원	잠실	이촌	고덕수변	야생탐사	난지습지원	암사

2) 암사생태공원 현황

- 한강공원 광나루지구에 위치한 암사생태공원은 한강과 관련한 체험형 생태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2008년 서울시 예산 30억원으로 162,000m²의 생태공원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습시설을 조성하여 현재 시민환경포럼이 2012년부터 3차례에 걸쳐 본 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음.



<그림 1> 암사생태공원 현황

3)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평가

- 암사생태공원의 민간위탁 성과평가에 따르면, 다양한 생태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재방문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또한 지역 내 교육기관과 기업체들의 봉사 참여로 공원 환경개선과 지역 사회 공헌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 암사생태공원 민간위탁 비용

(단위 : 천원)

년도	총 계	인 건 비 (노무비)	공원유지관리	프로그램운영	공과금 등 경비
2016	95,000	58,500	23,035	8,060	5,405
	100%	61.58%	24.25%	8.48%	5.69%
2017	79,700	50,374	17,550	4,308	7,467
	100%	63.20%	22.02%	5.41%	9.37%
2018	115,537	76,050	23,638	5,784	10,064
	100%	65.82%	20.46%	5.01%	8.71%

- 민간위탁비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건비의 비중은 임금상승 등의 이유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공원유지관리와 프로그램 운영비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한정된 예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되며,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프로그램 운영과 공원유지관리의 질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바임.
- 또한, 암사생태공원은 한강생태공원 중에서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인력이 3명으로, 이 중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은 1명뿐임. 이에 따라 생태공원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밖에, 강서습지생태공원은 지난 2016년 민간위탁 운영 방식을 추진하였으나, 낮은 위탁운영비로 인해 참여단체가 나타나지 않아 직접운영 방식을 채택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표 3> 한강생태공원 시설규모 및 민간위탁 현황

구 분	고덕수변생태공원	한강야생탐사센터	난지생태습지원	암사생태공원
위 치	강동 고덕 374-1 일대	마포 상암 482-298 일대	마포 상암 498-1 일대	강동구 암사동 616-1 일대
위탁기간	'17. 4. 1. ~ '19. 3. 31.	'17. 4. 1. ~ '19. 3. 31.	'17. 4. 1. ~ '19. 3. 31.	'17. 4. 1. ~ '19. 3. 31.
면 적	168,300m ²	543m ²	57,600m ²	162,000m ²
개 원 일	2003. 7. 4.	2009. 11. 2	2009. 11. 2	2008. 12. 30.
학습시설	40m ² (콘테이너 3동)	543m ² (지상 3층)	328m ² (지상 2층)	151.67m ² (지상 2층)
수탁기관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재)녹색미래	시민환경포럼
'18년 위탁비	115,537천원	93,387천원	115,537천원	115,537천원
관리인원	3명	3명	3명	3명
'17년 추진실적	생태프로그램 346회 운영 7,910명 참여	생태프로그램 275회 운영 5,995명 참여	생태프로그램 192회 운영 4,551명 참여	생태프로그램 690회 운영 11,415명 참여
'18년 추진실적 (7월 기준)	생태프로그램 163회 운영 3,614명 참여	생태프로그램 129회 운영 2,541명 참여	생태프로그램 228회 운영 4,166명 참여	생태프로그램 424회 운영 6,265명 참여

4)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암사생태공원은 민간위탁 운영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상근인력을 통한 한강 생태관리, 다양한 생태학습 프로그램 제공 등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곳임. 따라서 바람직한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생태공원의 관리와 운영의 노하우가 확보된 전문기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지난 2016년에 작성한 난지생태습지원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한강생태공원의 민간위탁에 대한 정기적인 운영 평가를 통해 질적 향상 및 방향성 제고에도 힘써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4에 따르면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가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누락되어 있었음. 이후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때에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답변 : 본 동의안에 대한 누락된 자료는 심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고 이후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때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질의 : 암사생태공원을 비롯한 한강생태공원의 민간위탁을 위한 예산이 부족해, 민간위탁 운영시 여러 어려움이 있어 보임. 따라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예산을 산출하고 원활한 한강생태공원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 답변 :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출하여 보고할 것이며, 앞으로 한강생태공원 민간위탁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 토론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암사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57
----------	----

제출년월일 : 2018년 8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암사생태공원은 한강공원의 생태를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교육하고, 참여자에게 생태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생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음
- 나. 외부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생태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많은 경험을 축적한 기관에 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시설명 : 암사생태공원
-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616-1 일대
- 시설규모 : 162,000 m^2 (학습시설 151.67 m^2 , 지상2층)
- 이용대상 : 한강 이용 시민

○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19. 4. 1. ~ 2022. 3. 31)
- 위탁사무
 - 한강과 관련한 체험형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자원봉사자 모집 및 상근인력을 통한 한강 생태관리
 - 암사생태공원 학습시설 유지관리(시설, 물품 등)
- 소요예산 : 115,537천원(연간, 2017년 기준)
-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나. 필 요 성

- 전문기관의 경험과 창의적 역량을 도입하여 수준 높은 생태교육으로 이용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암사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의 민간위탁이 필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의3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7.7.13.〕

※ 부칙 제2조 :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4조의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9년 예산편성 요구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사업과 김용광 (☎ 3780-0872)